

문서번호	기획조정실-4385
보존기간	영구
결재일자	2016.07.01.
공개여부	공개
방침번호	이사장 방침 제 182호

★대리	팀장	기획조정실장	경영전략본부장	이사장
협 조	상임감사			

# 직제규정 개정안

〈이사회 부의안〉

2016.

# 부 의 안

제 회 이 사 회			
일 자	2016.	의안번호	제 호
의 제	직제규정개정(안) 제 호		
구 분	의 결 사 항		

- 제 안 자 : 기획조정실장
- 주 문 : 직제규정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한다.
- 제안사유
  1. 서울시 방침 확정에 따른 수도계량기 검침·교체업무 기구(처) 반영
  2. 시의회 대행 동의안 가결에 따른 동대문운동장주차장 지상상가 운영 기구(처) 반영 및 공영주차장 업무 확대에 따른 업무분장 조정 등
  3. 안전기능 강화를 위한 안전관리처 업무분장 조정
- 의결사항 : 주문과 같음
- 참고사항
  1. 관련근거
    - 계량기 검침·교체업무 시설관리공단 대행에 따른 관리인력에 대한 의견 통보(요금제도과-6087호, '16.6.10)
    - 동대문운동장주차장 지상증축시설물 대행 동의안 가결 (제268회 시의회 본회의, '16.6.27)
  2. 절 차 : 이사회 의결 후 공포·시행

# 직제규정개정(안)

(제안요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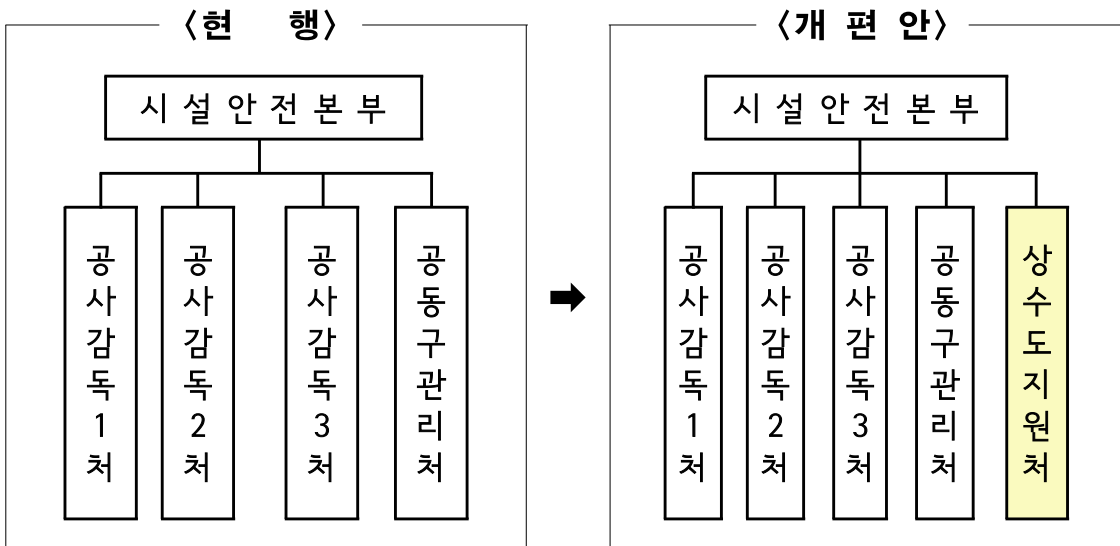
## 1. 제안이유

- 가. 서울시 방침 확정에 따른 수도계량기 검침·교체업무 기구(처) 반영
- 나. 시의회 대행 동의안 가결에 따른 동대문운동장주차장 지상상가 운영 기구(처) 반영 및 공영주차장 업무확대에 따른 교통시설운영처 업무 분장 조정 및 명칭 변경
- 다. 안전기능 강화를 위한 안전관리처 업무분장 조정

## 2. 주요내용

### 가. '시설안전본부'내 「상수도지원처」 신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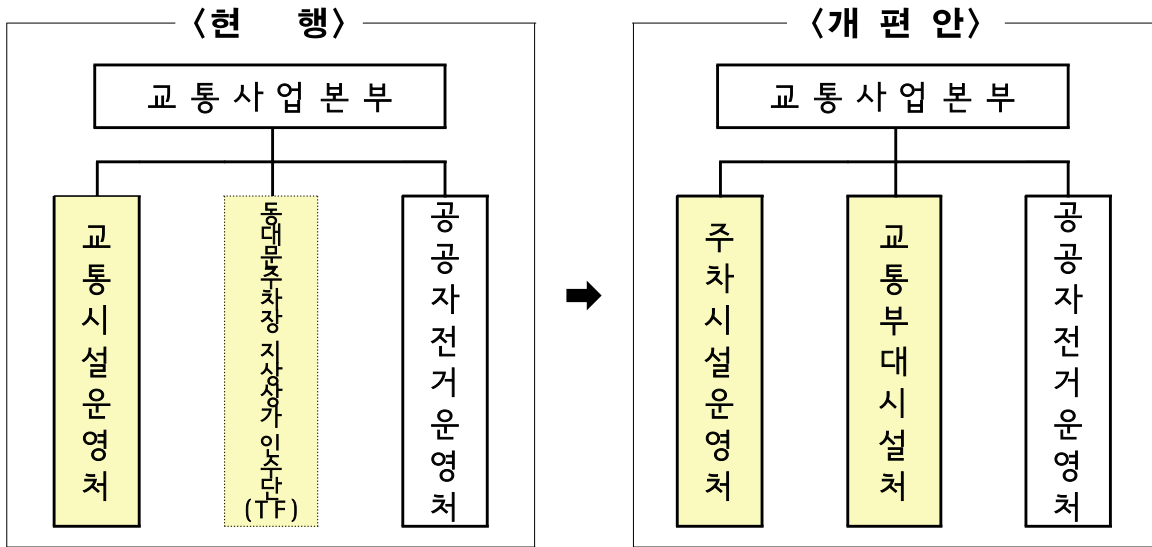
- 기구 신설(제12조 별표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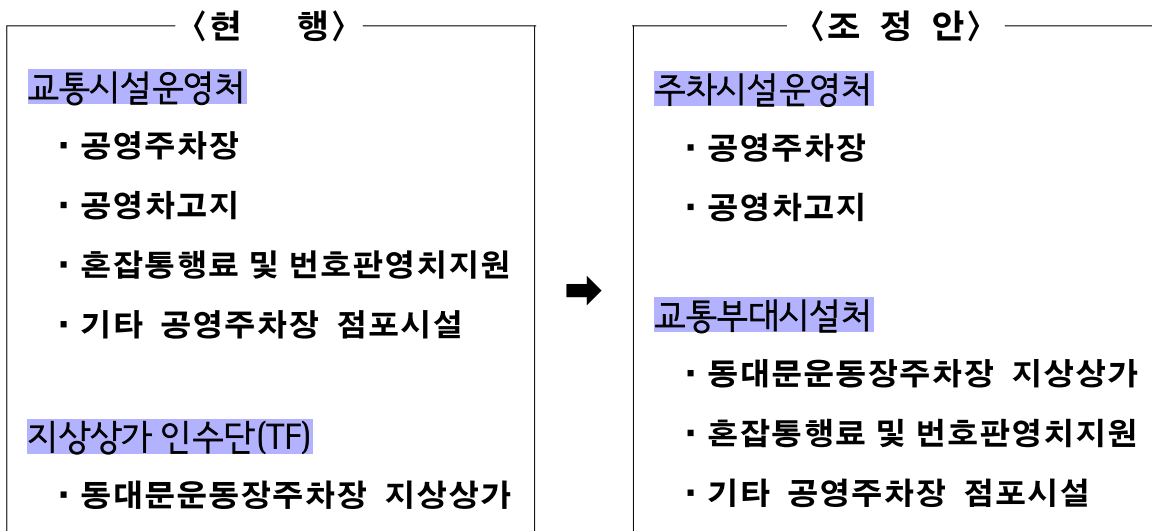
- 업무분장 신설(제15조 별표3)
  - 수도 계량기 검침 및 고지서 송달에 관한 업무
  - 수도 계량기 교체에 관한 업무
  - 기타 수도 계량기 검침 및 교체에 부수되는 업무

나. '교통사업본부'내 「교통부대시설처」 신설(기존 임시기구를 정식 기구화),  
**교통시설운영처 명칭 변경 및 업무분장 조정**

○ 기구 신설 및 명칭 변경(제12조 별표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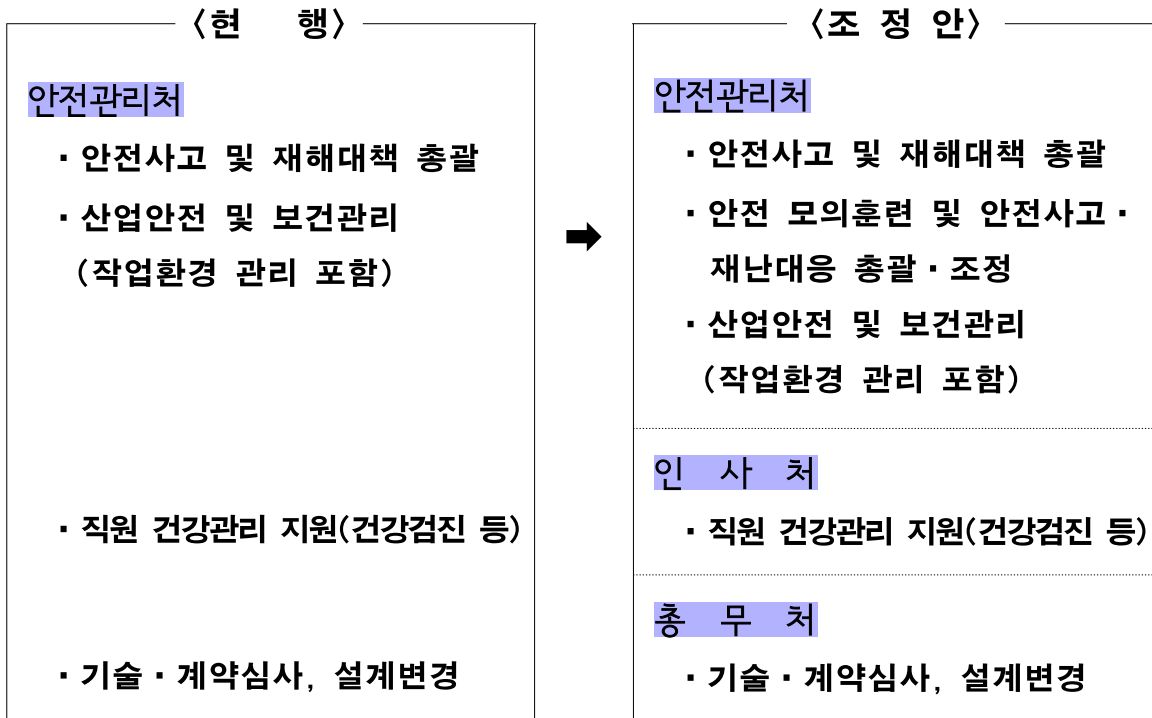
○ 업무분장 조정(제15조 별표3)



▶ 공영주차장 업무 지속 확대에 따라 관리 전문화 · 효율화 필요

- 32개소, 4,546구획('10.12월) ➡ 61개소, 13,942구획('16.6월 현재)
- 市 민간위탁 주차장 81개소 3,893구획 추가 인수('16.11.1 예정)
- 향후 훈련원공원 주차장('17년), 면목주차장('19년) 등 민자건설 주차장 지속적 추가 인수 예정

**다. 안전기능 강화를 위한 안전관리처 업무분장 조정(제15조 별표3)**



**라. 부칙 신설**

- 제1조(시행일) 공포일부터 시행
-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타 규정이나 내규 개정 간주

**3.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 계량기 검침 · 교체업무 시설관리공단 대행에 따른 관리인력에 대한 의견 통보(요금제도과-6087호, '16.6.10)
- 동대문운동장주차장 지상증축시설물 대행 동의안 가결 (제268회 시의회 본회의, '16.6.27)

**나. 절    차 : 이사회 의결 후 공포 · 시행**

## 직제규정개정(안)

직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이사 등) 제5호와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시설안전본부장은 공사감독1처, 공사감독2처, 공사감독3처, 공동구관리처, 상수도지원처 업무를 관장한다.

6. 교통사업본부장은 주차시설운영처, 교통부대시설처, 공공자전거운영처 업무를 관장한다.

제12조(기구) 제1항의 “별표1”을 조문변동 없이 별지의 “별표1”로 한다.

제15조(직무분장) 본문의 “별표3”을 조문변동 없이 별지의 “별표3”으로 한다.

“부칙”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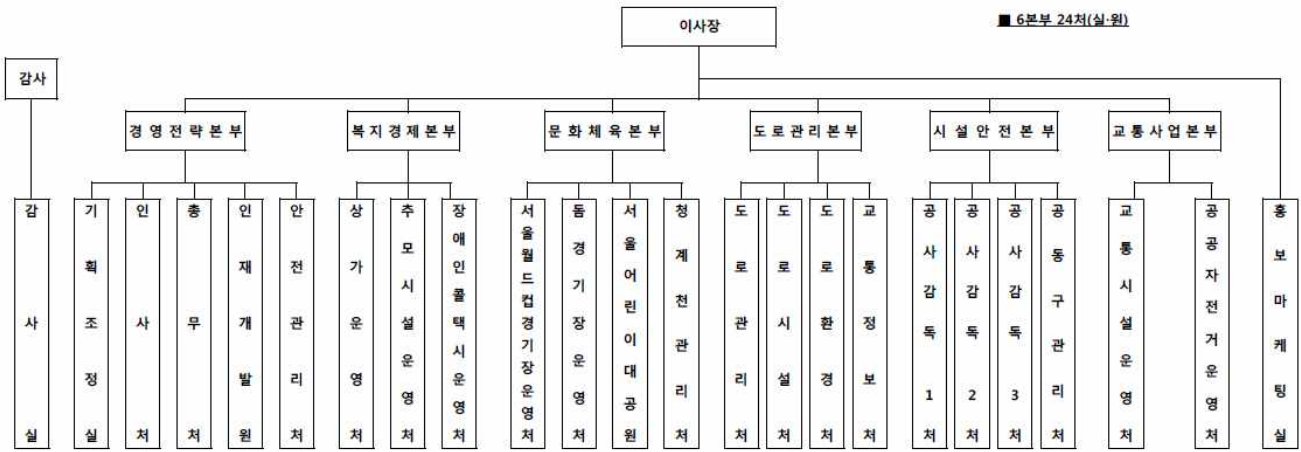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이 규정의 개정으로 인하여 다른 규정이나 내규에서 개정되어야 하는 용어는 이 규정 개정에 의하여 개정된 것으로 본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비 고
<p><b>제6조(이사 등)</b> (1~4호 생략)</p> <p>5. 시설안전본부장은 공사감독 1처, 공사감독 2처, 공사감독 3처, 공동구관리처 업무를 관장한다.</p> <p>6. 교통사업본부장은 <u>교통시설운영처</u>, 공공자전거운영처 업무를 관장한다.</p>	<p><b>제6조(이사 등)</b> (현행과 같음)</p> <p>5. 시설안전본부장은 공사감독 1처, 공사감독 2처, 공사감독 3처, 공동구관리처, <u>상수도지원처</u> 업무를 관장한다.</p> <p>6. 교통사업본부장은 <u>주차시설운영처</u>, <u>교통부대시설처</u>, 공공자전거운영처 업무를 관장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수도지원처 신설</li> <li>· 교통시설운영처 명칭 변경 (→주차시설 운영처)</li> <li>· 교통부대시설처 신설</li> </ul>
<p><b>제12조(기구)①</b> 공단의 기구는 “<u>별표1</u>”과 같다.</p>	<p><b>제12조(기구)①</b> 공단의 기구는 “<u>별표1</u>”과 같다.</p>	<p>조문변동 없이 “<u>별표1</u>”만 변경 (별지 참조)</p>
<p><b>제15조(직무분장)</b> 제12조의 기구별 업무분장은 “<u>별표3</u>”과 같다.</p>	<p><b>제15조(직무분장)</b> 제12조의 기구별 업무분장은 “<u>별표3</u>”과 같다.</p>	<p>조문변동 없이 “<u>별표3</u>”만 변경 (별지 참조)</p>
<p>부 칙 (신 설)</p>	<p><b>제1조(시행일)</b>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p> <p><b>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b> 이 규정의 개정으로 인하여 다른 규정이나 내규에서 개정되어야 하는 용어는 이 규정 개정에 의하여 개정된 것으로 본다.</p>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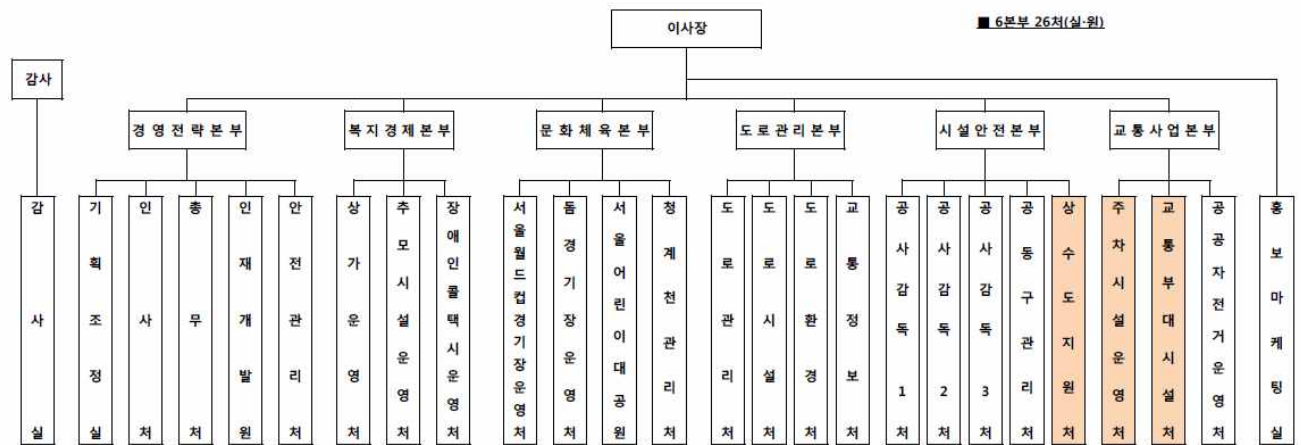
<별표 1> (현행)

# 기 구 표



<별표 1> (개정)

# 기 구 표





〈별표 3〉 (현행)

업 무 분 장

부서별	업 무 분 장 내 용
(감사실 ~ 기획조정실 생략)	
인사처	1~9. (생략) 10. (신설)
총무처	1~14. (생략) 15. 기타 타부서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16. (기존 15호를 16호로 이동하고 15호를 신설)
(인재개발원 생략)	
안전관리처	1. 안전사고 및 재해대책 업무 총괄 2. 산업안전 및 보건 관리에 관한 업무 3. 공사·용역 등에 대한 기술 및 계약심사, 설계변경 심의업무 총괄 4. 근무환경개선 추진계획 수립 및 사업장별 근무환경 개선 업무 5. 직원 정신건강 증진 및 스트레스 관리 등에 관한 업무
(상가운영처 ~ 공동구관리처 생략)	
상수도 지원처	(신설)
교통시설 운영처	1. 공영주차장 운영 전반에 관한 업무 2. 민간위탁주차장 수탁자 관리 감독에 관한 사항 3. 공영차고지 운영 전반에 관한 업무 4. 혼잡통행료 징수에 관한 업무 5.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지원 업무
교통부대 시설처	(신설)
(공공자전거운영처 ~ 홍보마케팅실 생략)	

〈별표 3〉 (개정)

업 무 분 장

부서별	업 무 분 장 내 용
(감사실 ~ 기획조정실 현행과 동일)	
인사처	1~9. (현행과 동일) 10. 건강검진 등 직원 건강관리 지원
총무처	1~14. (현행과 동일) 15. 공사·용역 등에 대한 기술 및 계약심사, 설계변경 심의업무 총괄 16. 기타 타부서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인재개발원 현행과 동일)	
안전관리처	1. 안전사고 및 재해대책 업무 총괄 2. 안전 모의훈련 및 안전사고·재난 대응 총괄·조정 3. 산업안전 및 보건 관리에 관한 업무(작업환경 관리 포함)
(상가운영처 ~ 공동구관리처 현행과 동일)	
상 수 도 지 원 처	1. 수도 계량기 검침 및 고지서 등 송달에 관한 업무 2. 수도 계량기 교체에 관한 업무 3. 기타 수도 계량기 검침 및 교체에 부수되는 업무
주차시설 운 영 처	1. 공영주차장 운영 전반에 관한 업무(점포시설 제외) 2. 민간위탁주차장 수탁자 선정 및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3. 공영차고지 운영 전반에 관한 업무
교통부대 시 설 처	1. 동대문운동장주차장 지상상가 운영 전반에 관한 업무(건물 관리 포함) 2. 기타 공영주차장 점포시설 운영 업무(건물 관리 제외) 3. 혼잡통행료 징수에 관한 업무 4.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지원 업무
(공공자전거운영처 ~ 홍보마케팅실 현행과 동일)	